

[양식 제19호]

사 망 신 고 서 (년 월 일)						※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 선택형 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							
① 사 망 자	성명		*한글 한자		/ (명)		성 ①남	별 2여	*주민 번	등록 호			-
	등록기준	·지											
	*주소								서]대주·	·관계		의
	*사망일	길시		년 월 일 시 분(사망지 시각: 24시각제로 기재)									
			장소										
	*사망장소		구분	 주택 4 공공 10 산업 	'시설(학: 장 [장 등)	5 도	로 [6	상업	•서비	스시설(고아원 등) 상점, 호텔 등) 송 중 사망)
②기타사항													
	*성명		⑪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−										
③ 신 고 인	*자격	1	동거친]족 [2]	비동거친족	주 <u>③</u> 동	거자	*-	관계				
	*/1/7	4	④기타(보호시설장/사망장소관리자 등)										
	주소							*전회	-		0]	메일	
④제출인		7	성 명				_	주민	등록반	<u></u> 호		_	

- *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눈표(*)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- ※ 아래 사항은 「**통계법」 제24조의2**에 의하여 **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**입니다. 「통계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과 혼인상태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	인구동향조기	\}
少최종졸업학교	1 학력 없음	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(교) ⑥ 대학원 이상
ⓒ 혼인상태	1 미혼	② 배우자 있음 ③ 이혼 ④ 사별

※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읍면동접수	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	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			
	년 월 일(인)				

작 섯 밨 법

※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① 사망자

- 등록기준지: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: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 일)를 기재합니다.
 - ·사망일시 : <예시> 오후 2시 30분(×) → 14시 30분(○). 밤 12시 30분(×) → 다음날 0시 30 분(〇)
 -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,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,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"(서머타임 적용)"이라고 표시합니다.
 - ·사망장소 구분 : 🗓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 를 포함 🔟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, 선박,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
 - ·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(시구의 '동', 읍면의 '리') 또는 도로명주소의 '도로명' 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.

② 기타사항

- •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③ 신고인
- ·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'영표(○)'로 표시하되 ④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.
- ④ 제출인
- ·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- ※ 아래 사항은 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**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**입니다.

⑦ 최 졸업학교

•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, 각급 학교의 재학(중퇴)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'영표(○)'로 표시를 합니다. 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→ 4 고등학교에 '영표(○)'로 표시

첚 부 서 류

- 1.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.
- 2.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(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): 아래 중 1부.
 -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
 - 예시 :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,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,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,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
 -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
 - ③ 기타 : 증명서(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)
 - 증명인이 동·리·통장일 경우 :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, 원칙적으로 동·리·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.
 -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: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, 증명인의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증사본, 운전면허증사본, 여권사본,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※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3.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.
- 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 야 합니다.
- 5.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: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
※재산상속 한정승인, 포기 안내

*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 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의 :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.
 - : 포기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.
- 2. 방 식 : 한정승인 -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.
 - : 포기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.
- 3. 신고기간 :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(민법 제1019조제1항)
 - :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(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
- 할 : 상속개시지[피상속인의 (최후)주소지]관할 법원